

## EU 확대와 노동 이동

문남철\*

---

**요약:**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어:** EU 확대, 노동이동, 노동이동 자유화, 노동이동의 계층성

---

### 1. 서론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 이익의 상호증대를 위해 인접 국가들과 지역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들은 경제적 상호이익을 위해 회원국간 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확대하고 있지만,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전 세계 상품수출은 전 세계 GDP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국내 총 고정부자량의 약 6%에 달하고 있으나 세계 노동이주는 훨씬 제한적이어서 2005년 현재 약 1억 9100만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약 2.9%에 불과하다

(UNCTAD, 2006; ILO, 2006).

EU의 노동이동의 자유화는 다른 지역경제공동체의 노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왔다. EU의 회원국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통합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 초기부터 노동이동의 자유화는 단일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품, 자본,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유럽통합과정의 핵심을 이루었다. 1968년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회원국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된 이후,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단일공동시장이 완성되어 회원국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었다. 더 나아가 1999년 유럽 통화통합(EMU)의 출범으로 회원국간 노동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포함한 단일경제권의 기능이 더욱 강화

---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되었다.

노동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EU는 그동안 7차에 걸친 지역적 확대로 서부유럽 국가들(1973년)과 북부 유럽 국가들(1995년)은 물론 남부유럽 국가들(1981, 1986년)과 중·동부유럽 국가들(1990, 2004, 2007년)과의 통합을 실현해 왔다. 지역공동체의 지역적 확대는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이동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새로운 회원국의 통합은 기업의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노동수요를 창출하며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국간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EU의 노동이동의 자유화와 지역적 확대로 회원국간 노동이동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노동이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취급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의 노동이동 자유화와 지역적 확대가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EU의 회원국간 노동이동의 자유화 과정과 비회원국 대한 차별적인 노동이주 정책 및 노동이주 정책의 공간적 체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EU의 노동이동의 일반적인 경향과 EU의 지역적 확대과정이 역내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EU의 역내 노동이동의 계층성을 파악한다. 노동이동의 지역간 계층구조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EU 회원국을 경제적 요소의 차이 따라 북(the North) 유럽연합 국가군(중심부)과 남(the South) 유럽연합 국가군(주변부)으로 계층화시켜 분석하였다. 북유럽연합 국가군에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10개 회원국이, 남유럽연합 국가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포함되었다.<sup>1)</sup>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최근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8개 회원국과 몰타, 키프로스,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간한 'Migration Statistics 2002'와 'Population Statistic 2006'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그 밖에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전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 속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노동이동을 예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신고전 경제이론에서는 국가간 노동이동은 국가간 경제발전의 수준과 실업률의 차이에 의한 임금과 고용기회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Sjaastad, 1962; Harris and Todaro, 1970). 그리고 노동시장이 통합되어 회원국간 노동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면, 회원국간 노동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또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노동이동에 관한 이러한 설명적 변수들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Wissen and Visser, 1998; Bauer and Zimmerman, 1998)에서 국가간 소득의 차이와 실업률의 차이는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연구(Neven and Gouyette, 1995)에서는 상대적인 실업률은 노동이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상대적인 임금의 차이는 실업률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국가간 소득격차와 실업률이 노동이동을 유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국지적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노동의 이동이 아닌 실업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Decressin and Fatas, 1993). 그리고 노동이동은 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단지 금전적 보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 관습, 문화적 배경, 가족관계 등

사회적 접근성(social proximity)과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이주비용, 세제상의 차이, 노후에 대한 보장, 고향에의 향수 등 심리적·경제적 비용과 주거시장도 노동이동에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이동을 임금격차나 고용기회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Wissen and Visser, 1998; Bauer and Zimmerman, 1998; Tassinopoulos and Werner, 1998). EU의 경우, 노동시장의 통합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일하기가 쉬워졌지만 노동이동은 오히려 둔화되었다. 그리고 저임금의 남부유럽 국가의 가입으로 이들 국가에서 서부유럽 국가로의 노동의 대량이동이 예상되었으나 이동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역 이주 현상까지 보였다(Tribalat, 1986). 또한 다른 회원국으로의 이주 동기는 더 좋은 노동환경 및 더 많은 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더 나은 기후 및 주거환경 추구이며,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언어, 타 문화에 대한 적응, 주거지와 사회보장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6).

신고전주의 무역이론(Heckscher-Ohlin model)에서는 경제가 통합되어 무역이 자유화되면 각 국가들은 상대적 이익이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수출하게 되어 무역이 노동이동을 대체할 것이라 보았다. 특히 무역은 산업국에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미숙련 노동이동을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EU의 경우, 그리스나 스페인의 노동이동 흐름의 역전은 무역장벽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는 두 국가간 무역이 활발하나 노동이동 흐름의 역전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Garson, 1998). 노동이동 흐름의 역전은 무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 국가의 경제발전 및 격차해소, 고용창출, 문화적 요인, 정치적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세계체계론(world system theory)의 관점에서는 지역경제의 통합으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 자본주의 축적의 논리에 의해 규모의 경제와 시장접근에 따른 이익을 위해 산업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되며, 지리적 집적은 순환적·누적적 인과관계(circular cumulative causality)로 강화되어 중심부와 주변국으로 편성된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노동시장을 분산시켜 중심부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변부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노동의 이동은 확대된다. 그러나 회원국간 완전한 경제통합이 실현되고 운송·통신비용이 감소되면 중심부가 갖고 있던 시장 접근의 이점은 낮아지고 주변부의 낮은 임금이 시장에서 먼 단점을 상쇄하여 생산활동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전된다. 생산활동의 이전으로 주변부는 중심부와 임금 차이는 통합되기 시작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노동이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Krugman and Venables, 1995).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의 확대로 저임금의 단순노동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이동이 감소하지만 고숙련 전문가의 이동은 중심부로 집중되는(Bailly and Maurau, 2001) 이동의 차별성을 보인다. 이들의 이동은 단지 자신의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부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지역간 노동이동의 분석은 어떤 특정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간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이론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견해와 이론들이 결합된 접근이 요구된다.

### 3. 노동이동의 자유화 과정과 노동이주 정책의 공간적 체계

#### 1) 노동이동의 자유화 과정

노동이동의 자유화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창설 초기부터 단일공동시장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상품, 자본,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유럽통합과정의 핵심이었다.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의 토대가 된 로

마조약(1957)에는 <공동체는 공동시장의 창설과 회원국 경제정책의 점진적 접근과 전체 공동체 내 경제활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증진하는데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내부시장은 상품과 인적,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조약의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국경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여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로마조약(Treat of Rome)에 규정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전문 직업에 대해 복잡한 국내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내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은 매우 어려웠다. 회원국간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이 채택된 1968년에서야 비로서 실현되었다.<sup>2)</sup>

1970년대에는 유럽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유럽통합

은 물론 노동의 자유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0년대 들어 서부유럽 국가들은 경제통합 없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성장률 둔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유럽통합이 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85년 쉥겐 제1협정(Schengen I-Agreement)을 통해 5개 회원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은 개인의 자유이동을 위한 국경 개방을 합의하였으며, 1990년 제1협정 내용을 보완한 쉥겐 2협정(Schengen II-Agreement)이 체결되어 1995년 7개 회원국(기존 5개국, 스페인, 포르투갈)간 개인의 자유이동이 실현되었다. 이후 그리스(1992년), 오스트리아(1995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1996년) 등이 쉥겐 협정에 가입하면서 개인의 자유이동이 지

표 1. EU의 노동이동 자유화의 주요 연표

| 년도   | EU 확대와 주요 조약    | 사항   |
|------|-----------------|--|
| 1957 | EEC 출범(로마조약)    | 6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EEC 창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     |
| 1968 | -               | 6개 EEC 창설 회원국간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                                     |
| 1973 | 제1차 확대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가입(유예기간 없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시행)                          |
| 1981 | 제2차 확대          | 그리스 가입(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시작)                                   |
| 1985 | 셥겐 제1협정         | 5개 회원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간 자유이동을 위한 국경개방 합의                |
| 1986 | 제3차 확대          |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시작)                             |
| 1988 | -               | 그리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종료                                       |
| 1990 | 제4차 확대          | 동독지역 통합  |
| 1990 | 셥겐 제2협정         | 7개 회원국(기존 5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간 자유이동 실현<br>EEA 회원국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동 확대    |
| 1991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유럽시민권 부여   |
| 1992 | -               | 스페인과 포르투갈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종료                                 |
| 1995 | 제5차 확대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유예기간 없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시행)                        |
| 1998 | 암스테르담 조약(EU 조약) | 셥겐 협정의 모든 자유이동의 법적, 제도적 결과물이 EU로 합병                                |
| 2004 | 제6차 확대          | 중·동부유럽 8개국*과 키소로스 및 몰타 가입<br>(중·동부유럽 8개국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시작) |
| 2007 | 제7차 확대          |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시작)                            |
| 2011 | -               | 중·동부유럽 8개국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 종료                                |

주 : \* 중·동부유럽 8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역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sup>3)</sup>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 of Maastricht)으로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어느 회원국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EU 시민권<sup>4)</sup>이 부여되어 EU 회원국간 완전한 자유이동과 거주가 보장되었다. 그리고 1998년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EU 조약)의 체결로 쉥겐 협정을 통해 얻어진 모든 자유이동의 법적, 제도적 결과물들이 EU로 합병됨으로써 EU 회원국 간에는 회원국의 노동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구직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eek employment),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move),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side),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회원국에 잔류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main)를 가지게 되었다.

## 2) 노동이주 정책의 공간적 체계

단일공동시장의 설립과 일련의 조약들로 EU 회원국 노동자들의 이동은 더욱 자유로워진 반면에 비 회원국 노동자의 이동은 제한되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EU 노동자들은 쉥겐 체제의 구축으로 회원국간 내부국경의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자유로운

이동이 법적으로 보호되었으며, EU 조약으로 어느 회원국에서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EU의 노동이주의 공간적 체계는 지역통합의 단계에 따른 노동이주의 제한 정책에 따라 4개의 동심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Geddes, 2000). 우선, 제1동심원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쉥겐 국가(Schengenland)들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제2동심원 국가들은 EU 가입 후보국가(Aspirant)들로 EU 또는 회원국들과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제한적인 노동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3동심원은 터키와 일부 발칸반도 국가들,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들 국가는 EU로 유입되는 불법적인 노동이주와 범죄 네트워크를 여과하는 완충국가(Transit Countries)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이주의 적극적인 제한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는 노동이주의 개방없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4동심원은 중국,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로 강력한 노동이주 제한정책의 적용으로 노동이주가 완전히 배제된 국가(excluded countries)들이다.

EU는 신규 회원국에 대해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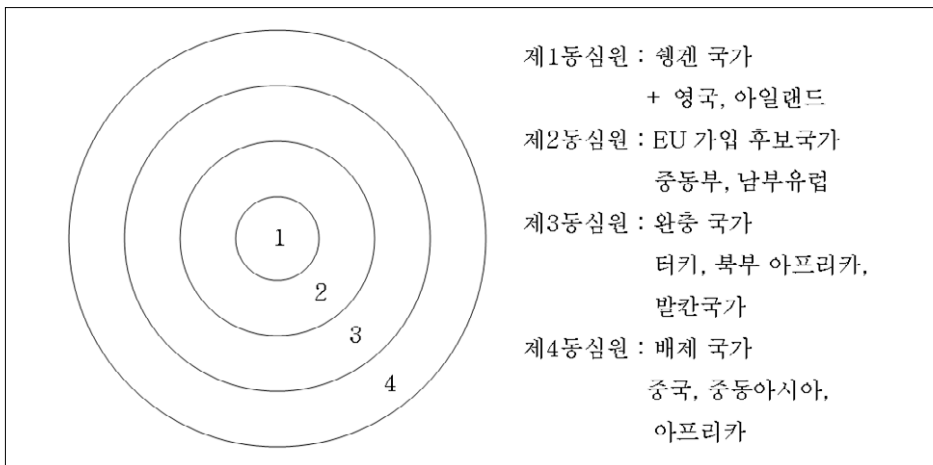


그림 1. EU의 노동이주 정책의 공간적 체계

자료 : Geddes(2000)

이동은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할 때마다 신규 회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노동이주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회원국들은 자국의 실업률과 신규 회원국과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위 2+3+2(2+3+2 year arrangement)의 3단계를 걸쳐 최대 7년까지 신규 회원국 노동의 자유로운 이주를 제한할 수 있다. 1973년 가입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과 1995년 가입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없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행되었으며 1981년 가입한 그리스와 1986년 가입한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가입과 더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졌다. 2004년 가입한 중·동부 8개 회원국 역시 가입과 더불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예기간이 실시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신규 회원국에 대한 노동이주 제한정책은 회원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통적 체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 지역적 확대와 노동이동

### 1) 일반적 경향

EU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교적 동질적이며, 정치적 안정과 양호한 경제적 전망을 갖고 있어 활발한 노동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륙 및 지역경제공동체에 비해 매우 낮은 노동이동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 역내 노동 이동은 누계기준으로 1990년(EU-12) 전체 회원국 인구의 4.4%, 2000년(EU-15) 4.6%, 2004년 6.7%를 나타내었다. 이 가운데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 및 근로하고 있는 인구는 EU 전체 시민의 1.5-2.0%에 불과하며(European Commission, 2006), 0.4%만이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주비율은 매년 인구의 약 3%가 거주지를 옮기는 미국(OECD, 1994)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노동이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최근에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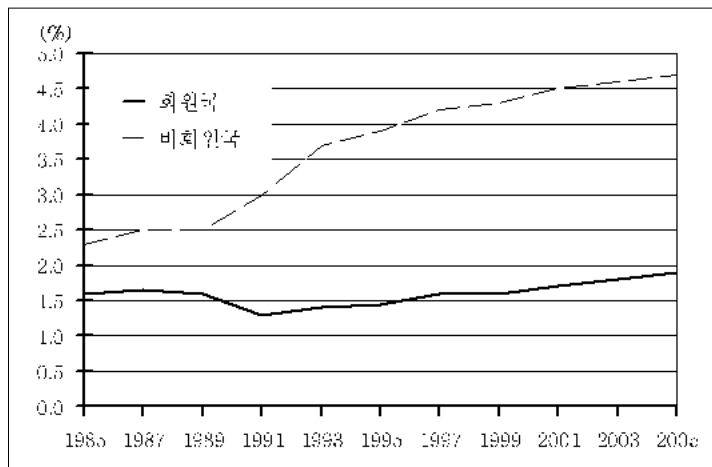


그림 2. EU 역내 이주자 추이

자료: Eurostat(2007) 외.

간 경제수준의 차이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노동 유출국이었던 남부 유럽 국가들이 EU 가입 이후 역내 자본의 유입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발전수준이 서부유럽 국가에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노동의 역내 이동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둘째,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은 역내 노동이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실업률은 1971-1980년(EU-12) 4.1%, 1991-1995년 10%, 1996-1999년(EU-15) 9.6%, 2000-2004년 7.8%를 기록하였다. 실업은 특히 조선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등과 같이 많은 반 숙련 또는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제조업에서 발생되어 단순 노동자의 이동을 크게 약화시켰다. 셋째, 단순 노동자가 부족한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여 노동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본-노동 간의 대체 조절, 즉 노동 집약도를 낮추거나 또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부족을 해결했기 때문에 노동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넷째, EU 회원국간에는 언어, 문화, 사회보장 제도, 주거시장 등 노동의 이동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장애요소

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노동이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동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지중해 연안 아랍 국가의 노동력 존재는 EU 역내 노동이동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2) 지역적 확대와 노동이동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창설과 더불어 시작된 6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간 노동이동 자유화는 제1차 확대가 이루어진 1973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1960년대-70년대 초) 서부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단계를 거쳐 호황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고용기회가 창출되었다. 반면에 1930-40년대 낮은 출생률로 1960년대 노동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어 노동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부족한 노동공급, 특히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은 노동인구의 성장과 낮은 소득수준을 지닌 남부 및 동부유럽 국가와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입된 노동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 시기 노동이동은 크게 프랑스, 영국, 벨기에, 서독 등 노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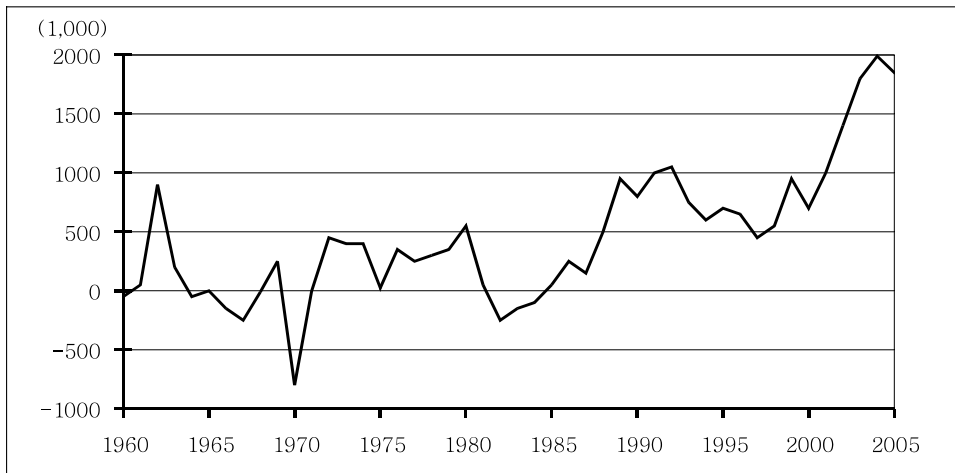


그림 3. EU의 순 이주 추이(EU-25)

주 : 순 이주 = 유출 - 유입  
 자료 : Eurostat(2007)

받아들이는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노동을 보내는 국가로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특히 노동의 이동은 회원국 내에서만 자유로웠기 때문에 회원국가인 이탈리아의 노동자가 서부 유럽국가 노동공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제성장으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로부터 노동이주를 받아드리게 되었다.<sup>6)</sup>

제1차 확대(1973년)로 EU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서부유럽 3개국을 통합하였다. 이 시기 서부유럽은 원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노동공급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회원국들은 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비회원국은 물론 회원국의 노동이주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국간 노동이동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제2차(1981년)와 제3차(1986년) 확대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통적으로 기존 회원국에 노동을 공급하던 지중해연안 국가들이 새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에는 기존회원국들과의 경제발전 및 후생복지 차이로 저임금 노동력이 대거 기존 회원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노동이동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이동의 경향이 크게 변화하여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귀국하는 노동자의 수가 이주하는 수를 능가하였다(Tribalat, 1986). 이와 같은 노동이동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을 공급하던 신규 회원국들이 EU 가입 후 역내 무역의 증가와 외부로부터의 투자 자본의 유입 증가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임금이 상승하여 이동의 요인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출산력이 감소하여 노동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국가로부터 노동을 유입하던 기존 회원국들이 경기침체기간 동안 노동-자본 대체의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노동수요의 견인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U는 제4차(1990년)와 제5차(1994년) 확대로 동독

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북부유럽 국가들을 새로 통합하였다. 북부유럽 3개국의 가입은 노동이동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미 1970년대 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영국의 가입을 계기로 EU와 EFTA간 자유무역지역을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 꾸준한 협력확대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통합이 이루어져 왔다. 제6차 확대(2004년)로 중·동부유럽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여 EU 회원국은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노동이동은 증가하였지만, 이들 신규회원국의 이주 노동자가 기존회원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스트리아(1.4%)와 아일랜드(3.8%)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회원국에서는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ww.eurative.com).

## 5. 노동이동의 계층성

### 1) 이주 노동자의 지역적 분포

EU의 노동이동은 회원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05년 EU 거주 외국인인 약 2,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EU 회원국의 이주자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거주 외국인의 80%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에 가장 많은 약 73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회원국 가운데 거주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9%에 달하며, 이들 거주 외국인의 약 85%는 EU 회원국에서 이주하였다. 그 밖에 높은 거주 외국인 분포를 보이는 회원국으로는 오스트리아(9.4%), 독일(8.8%), 벨기에(8.3%), 그리스(8.1%), 스페인(7.8%), 아일랜드(6.2%), 프랑스(5.6%), 영국(5.0%) 순이다. 그러나 1990년과 비교하여 거주 외국인 수는 북유럽 국가들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과거 노동력의 유



출지역이었던 남유럽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EU 전체 거주 외국인 가운데 회원국의 이주자는 약 700만 명이며, 이들 가운데 약 70%가 북유럽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4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 거주자의 대부분은 과거에 남유럽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들로 2000년 현재 독일에는 이탈리아인(62만), 그리스인(36만), 오스트리아인(19만), 포르투갈인(13.5만), 에스파냐인(13만)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랑스에는 포르투갈(56만), 이탈리아인(20.5만), 에스파냐인(16만)이, 영국에는 18만 명의 아일랜드인이, 벨기에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인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남유럽 국가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은 EU 회원국 보다는 비회원국 이주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EU 회원국

간 노동이동 흐름에 지역간 계층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노동이동의 계층성

### (1) 노동이동의 지역간 계층성

EU의 노동이동 흐름은 전통적으로 임금격차와 후생복지의 차이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들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2004년 EU 전체 노동 유출·입의 약 60%가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표 2. EU 회원국의 거주 외국인 분포

| 국가      | 거주 외국인 수(천 명) |        | 외국인 비중(%) |      | EU 회원국(%) |      | 비 회원국(%) |      |
|---------|---------------|--------|-----------|------|-----------|------|----------|------|
|         | 1990          | 2005   | 1990      | 2005 | 1990      | 2005 | 1990     | 2005 |
| 북유럽 국가군 |               |        |           |      |           |      |          |      |
| 독일      | 5,518         | 7,288  | 6.1       | 8.8  | 1.8       | 2.5  | 4.3      | 6.3  |
| 프랑스     | 3,597         | 3,263  | 6.3       | 5.6  | 2.3       | 2.1  | 4.0      | 3.5  |
| 영국      | 2,429         | 2,941  | 4.2       | 5.0  | 1.4       | 1.8  | 2.8      | 3.3  |
| 룩셈부르크   | 116           | 177    | 28.7      | 39.0 | 25.5      | 33.0 | 3.2      | 6.0  |
| 벨기에     | 905           | 871    | 8.9       | 8.3  | 5.5       | 5.5  | 3.4      | 3.0  |
| 네덜란드    | 692           | 699    | 4.3       | 4.3  | 1.5       | 1.4  | 2.8      | 2.9  |
| 덴마크     | 161           | 268    | 2.9       | 4.9  | 0.5       | 1.3  | 2.4      | 3.7  |
| 오스트리아   | -             | 765    | 5.7       | 9.4  | -         | 2.3  | -        | 7.1  |
| 스웨덴     | -             | 481    | 5.3       | 5.3  | -         | 2.3  | -        | 3.0  |
| 핀란드     | -             | 108    | 0.4       | 2.1  | -         | 0.7  | -        | 1.4  |
| 남유럽 국가군 |               |        |           |      |           |      |          |      |
| 그리스     | 229           | 891    | 1.4       | 8.1  | 0.3       | 1.1  | 1.1      | 7.0  |
| 이탈리아    | 781           | 2,402  | 0.6       | 4.1  | 0.1       | 0.4  | 0.5      | 3.8  |
| 포르투갈    | 108           | 239    | 1.1       | 2.3  | 0.3       | 0.6  | 0.8      | 1.7  |
| 스페인     | 484           | 3,371  | 1.0       | 7.8  | 0.6       | 1.6  | 0.4      | 6.2  |
| 아일랜드    | 88            | 255    | 2.3       | 6.2  | 1.8       | 3.2  | 0.5      | 3.0  |
| 북유럽 국가군 | 13,418        | 16,861 | 6.0       | 7.1  | 2.0       | 2.4  | 4.0      | 4.7  |
| 남유럽 국가군 | 1,690         | 7,158  | 1.4       | 6.0  | 0.5       | 1.0  | 0.9      | 5.0  |
| 합계      | 15,108        | 24,019 | 4.4       | 6.7  | 1.4       | 1.9  | 3.0      | 4.8  |

주 : 1990년은 EU 12개국, 2005년은 EU 25개국 기준임

자료 : Eurostat(200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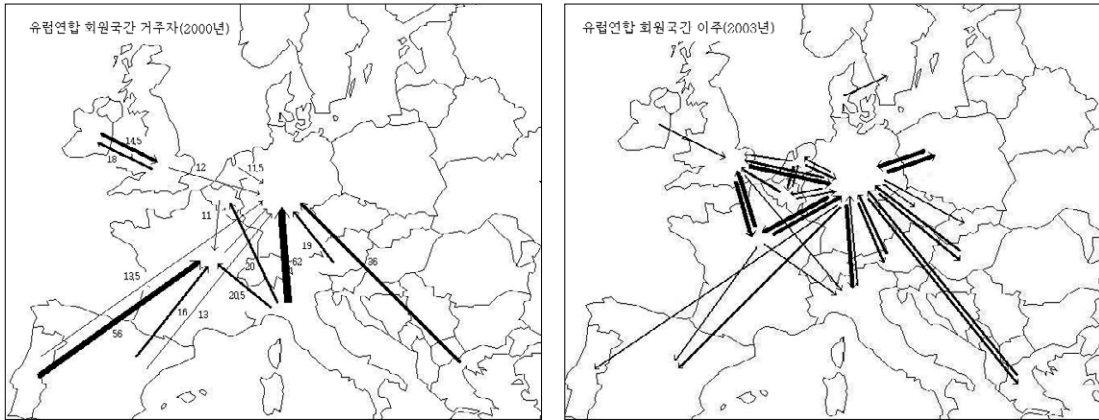


그림 4. EU 회원국간 이주 흐름

80% 이상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에 집중되었다. 이와는 달리 약 17%가 북유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 약 20%가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이었으며, 단지 3%만이 남유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의 이동이었다. 1992년과 비교하여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53%에서 61%로, 북유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10%에서 17%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35%에서 20%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표 3). 이러한 노동이동 흐름의 변화는 EU의 시장통합으로 남유럽 국가에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어 고용창출의 기회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의 요인

은 감소한 반면에 역내투자과 무역의 증가로 북유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의 이동요인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유럽 국가의 노동수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으로 변화되어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과 기술력을 지닌 북유럽 국가의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주 노동력의 특성과 계층성

2차 대전 이후 EU 형성 초기의 노동이동은 낮은 숙련도를 지닌 노동력이 이동의 주를 이루었다(Wolburg and Wolter, 1997). 그러나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

표 3. EU의 계층간 이주 흐름

| 기원지 → 목적지       | 전체 이주자 |      | 학위 이주자* |      |
|-----------------|--------|------|---------|------|
|                 | 1992   | 2004 | 1992    | 1999 |
| 북유럽 국가 → 북유럽 국가 | 53     | 61   | 61      | 75   |
| 북유럽 국가 → 남유럽 국가 | 10     | 17   | 13      | 8    |
| 남유럽 국가 → 북유럽 국가 | 35     | 20   | 24      | 14   |
| 남유럽 국가 → 남유럽 국가 | 2      | 3    | 2       | 3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주 : \* 독일은 제외

자료 : Eurostat(2002, 2006), Bailly and Maurau(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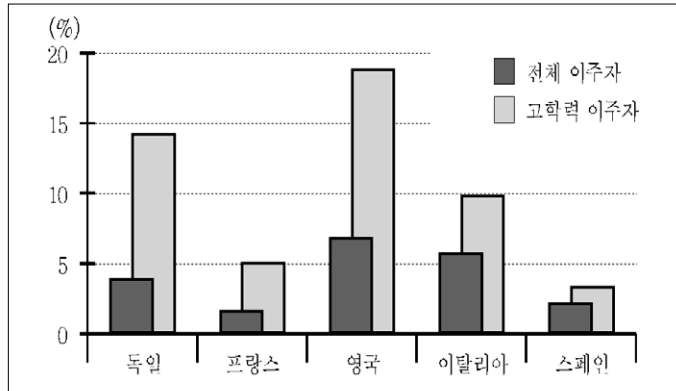


그림 5. EU 주요 국가의 이주자 특성(1990-2000)

자료 : Docquier and Marfouk(2004)

동력은 높은 이동성을 보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6).

1990-2000년 EU 주요 국가의 이주자는 고학력 이주자가 전체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경향을 보였으며, 영국과 독일은 고학력 이주자가 전체 이주자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이동성을 나타냈다. 고학력 노동자의 높은 이동성향은 회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고, 고학력 노동자는 새로운 산업 및 정보에 대한 적응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국간 교환 교육 프로그램은 젊은 고학력 노동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간에는 고학력의 전문기술 자격이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개인의 성공과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 기술인력과 정보가 집적된 지역으로 이주하는 성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학력의 젊은 노동자는 이주 투자를 가치화하기 위한 동기가 높고 기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적어 쉬운 이동성을 보인다.

이들 고학력 이주자의 흐름은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 EU 전체 고학력 이주자의 61%가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1999년에 그 비중이 75%로 현저히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북유

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같은 기간 13%에서 8%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24%에서 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유럽 국가에서 남유럽 국가로의 이동은 3% 이내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학력 노동자 이동은 주로 북유럽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6. 결론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는 그 동안 지역적 확대를 통해 서부 및 북부유럽 국가들은 물론 남부유럽 국가들과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통합해 왔으나 대규모 노동이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이것은 EU

가 노동의 자유화 과정을 통해 기존 회원국간에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였으나 신규회원국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이주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EU는 자유로운 노동이동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노동의 이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EU의 노동이동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국간 노동의 이동을 제한하는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U의 노동이동 흐름은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EU의 노동이동은 전통적으로 임금격차와 후생복지의 차이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기회 창출로 이동요인이 감소하고, 북유럽 국가의 노동수요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과 기술력을 지닌 북유럽 국가의 노동력이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특성도 EU 형성 초기에는 낮은 숙련도를 지닌 노동력이 이동의 주를 이루었으나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력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들 고학력 이주자의 흐름은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등 비회원국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EU는 지역간,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통합 모델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공간적 관성으로 노동이동의 계층성은 확대되고 있다.

## 주

- 1) EU 회원국간 경제적 요소의 차이에 따른 계층 구분은 문남철(2004), pp.373-374 참조.
- 2) 로마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회원국간 자유이동은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ECSC 6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석탄·철강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회원국간 이동의 제한을 제거하고, 법적으로 노동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로마조약의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과 이동의 자유는 노동자에서 경제활동을 실행하기를 원하거나 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장애요소(사회보장 제도의 조화, 자격과 학위의 상호인정)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에는 공공정책, 공공안보, 공공보건 등과 관련된 일부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이 존재하고 있다.
- 3) 현재 쉥겐 협정에는 기존 EU 회원국 중에서 영국과 아일랜드가 불참하였으며, 2004년 가입한 10개 신규회원국은 참여가 유보되어 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2년 유럽공동체(EC)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 참여로 창설된 유럽경제지역(EEA)에 따라 본 협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4) EU 시민권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확립되었지만, 초기 유럽시민권의 개념은 로마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로마조약에는 최초로 EU 시민권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로마조약에서 정의하는 '시민'이란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노동자'나 유럽 내 자본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 시민권과는 차이가 있다. EU 시민의 권리는 EU 내의 자유이동과 거주권, 지방 자치단체선거와 유럽선거권, 외교적 보호권, 유럽의회와 새롭게 창설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청원권을 포함하고 있다.
- 5)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EU에 가입할 당시 서부유럽 15개 회원국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2011년까지 2년, 3년, 2년씩 3차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15개 기존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 등 3개 회원국은 처음부터 중·동부유럽 신규 회원국에 대해 제한 없는 노동시장의 접근을 허용한 반면에 나머지 12개 회원국은 취업허가서(work

permit)나 쿼터할당(quota)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하였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 2년이 지난 현재 12개 기존 회원국 중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개방을 결정한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 등 4개 회원국에 불과하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4개 회원국은 일부 산업분야에서부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며, 네덜란드는 의회의 제정으로 2006년 말까지 보류되었으며, 덴마크는 노동시장 규제를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노동자의 자유이동의 마지막 시한인 2011년까지 규제연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 6) 1960년대 서부유럽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성장률은 0.5%를 나타낸데 반해 지중해연안 국가(스페인,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그리스)의 경제활동인구 성장률은 1.0%이었다. 1960-70년 사이에 서부유럽으로 이주해온 남부유럽인은 약 260만 명에 달했으며, 1964년 한 해 동안 약 22만 6천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서부유럽 국가들로 이주하였고, 1961-1974년 사이에 170만 명의 포르투갈인이 서부유럽 국가들로 이주하였다.

## 참고문헌

- 김태현, 2002, "EU의 동유럽 통합 확대가 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U학연구 7(1), pp.63-95.
- 문남철, 2004,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pp.371-388.
- 문남철, 2006, "동아시아 자본 및 노동이동의 구조적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pp.215-228.
- 이희연, 2003, 인구학-인구의 지리학적 이해(전면개정5판), 서울: 법문사.
- Bailly, F. and Maurau, G., 2001, Mobilité du travail en Europe et stratégies des entreprises, a presentation at Journées Sociale Litle.
- Bauer, Th. and Zimmerman, K. F. 1998, Caus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A Survey, in Gorter, C., Nijkamp, P. and Poot, J.(eds.), *Crossing borders: Regional and urb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Asgate, pp.95-127.
- Decressin, J. W. and Fatas, A. 1993, "Regional labour market dynamics in Europe and implication for EMU," *European Economic Review* 39, pp.1627-1655.
- Docquier, F. and Marfouk, A. 2004, "Measuring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skilled workers(1990-2000),"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381.
- European Commission, 2006, *Europeans and mobility: first results of an EU-wide survey*, Luxembourg.
- EUROSTAT, 2002, *Migration Statistics 2002*,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 EUROSTAT, 2006, *Population Statistics 2006*,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 EUROSTAT, 2007, *Living Condition in Europe: Data 2002-2005*,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 Geddes, A., 2000, *Immigr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toward fortress Europe?* NewYork: Manchester Univ. Press.
- Garson, J-P., 1998, *Migration, Free Trad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 America*, Paris: OECD.
- Harris, J. R. and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pp.126-142.
- ILO, 2006,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6*, Geneva.
- Russell, K.(ed.), 1993, *The New Geography of European Migration*, London: Belhaven.
- Krugman, P. and Venables, A., 1995, "Globalization and the inequality of nati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pp.857-880.
- Neven, D. and Gouyette, C. 1995, "Regional convergence and the inequality of nation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3, pp.47-65.
- OECD, 1994, *The Job Study*, Paris
- Sjaastad, L. 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pp.80-93.
- Tassinopoulos, A. and Werner, H., 1998, Mobility and migration of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and

- their specific implications for young people, *CEDEFOP Document*,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 Tribalat, M., 1986, "Migrations d'Etrangers en Republique Federale d'Allemagne," *Population* 41(3), pp.547-584.
- UNCTAD,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Geneva.
- Wissen, L. V. and Visser, H., 1998, An Explanatory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within the European Economic Area, in Gorter C., Nijkamp, P. and Poot, J.(eds.), *Crossing borders: Regional and urb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Asgate, pp.337-357.
- Wolburg, M. and Wolter, A., 1997, "Mobility Within and Into the European Union: Some Stylized Facts," Discussion Paper of the Europa-Kolleg Hamburg.
- <http://www.euractiv.com/en/enlargement/free-movement-labour-eu25/article-129648>  
(Free movement of labour in the EU-25)
- <http://www.europa.eu.int/comm/eurostat>
- 교신: 문남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Tel: 062-530-2680, E-mail: mnc83@hanmail.net
- Correspondence: Nam-Choel Moon,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el: 062-530-2680, E-mail: mnc83@hanmail.net

최초투고일 2007년 5월 10일  
최종접수일 2007년 6월 1일

## **Enlargement of EU and Migration of Workers**

Nam-Cheol Mun\*

**Abstract** : EU has pursued of the economic growth and the promotion of jobs by a free movement of workers. The free labour mobility brings 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ng jobs and the acquisition of a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but it also produces the geographical inequality of the movement of workers.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 redistributes geographically the flow of labour mobility.

The flow of labour movement within EU changes to the structure of mobility that moves from the North to the North instead of the movement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s 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th and an economic transformation to the service and hightech industry in the North. The mobility of unskilled workers has diminished, but the mobility of expert workers has increased. The flow of labour movement within EU has a structure hierarchic that the experts labour move from the North to the North, and the unskilled labour move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nd from the northern Africa to the South of Europe.

**Keywords** : enlargement of EU, migration of workers, free movement of workers, structure hierarchic of labour movement.

---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University